

감사결과 처분요구

No. 1					
부서·기관명	시행년도	행정상조치	재정상조치		비고
			조치방법	금액	
서대문구청	2023년	기관경고	-	-	

제목 :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 제11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 위반

[지적 내용]

-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“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·문화예술회관·청소년수련시설·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(이하 “특정공원시설” 이라 한다)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「국토계획법」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,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,
- 20△△년 예산 편성 당시 백련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 비율(특정시설률)은 ○○.○%로,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◆◆. △. 29. 종전의 근린공원이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분리되었고, 녹지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근린공원 공원시설률(특정시설률)이 상승된 것이어서 「국토계획법」 제48조에 따른 기준 충족 예외에 해당함에 따라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기는 하나, 백련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 비율은 이미 법정기준인 20%를 초과

한 상태여서 서대문구가 백련근린공원에 추가로 약 ☆㎡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게 됨이 명확하다.
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 제1항에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 대법원도 ‘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’란 예산안이 예산 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” 고 판시한 바 있는데,
- 서대문구는 20♣♣. ▲. 14. 「백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」을 수립하면서 백련근린공원에 약 ☆㎡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여,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하였고, 이에 대한 사업비 ◎◎◎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, 이는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.

[조치할 사항]

- 서대문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특정공원시설을 설치하고, 예산편성 및 집행 시 「지방재정법」,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,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